

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업무편람 및 가이드라인 개정(요약)

(2018.10.18, 자연공원과)

□ 개정이유

-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반환신청 시기 및 절차,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대통령령 및 부령 일부개정·시행(18.5.29)
- 반환사업의 건실성 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도입 및 제도 운용상 미비점 보완

□ 추진경과

- '09. 2. 「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」 제정
- '14.12.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, 반환사업 관리체계 변경사항 반영 등 개정
- '17.11.28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일부개정법률 개정·공포
- '18.5.29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대통령령 및 부령 일부개정·시행
- '18.9.4. 업무편람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(환경청, 지자체, 납부자)
- (주요의견) 사업 변경승인 절차 필요

□ 주요 개정내용

- (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 시기 및 절차)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착수 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반환 신청 가능
-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출,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에 한함 ※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8항
- (착공신고 수리) 반환사업 승인조건 및 인·허가 진행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면, 승인조건별 조치 결과서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환경청 검토 후 신고 수리

- **(변경승인)** 착공 후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면적이 30% 이상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종별 사업비가 30%이상 변경될 경우 및 그 외 필요시 환경청에서 변경승인*(시행시기: '19년 승인사업부터)
 - * 기존 사업계획 변경시 검토에서 변경승인으로 명확화

- **(사후관리)** 사업 완료 후 반환금 신청 시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,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·인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강화
 - ※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제4항
 -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는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사업 준공 후 3년차부터 2년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
 - ※ 준공 후 2년간은 납부자 또는 대행자가 하자보수 및 모니터링 실시, 지자체는 교부받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예산 활용(법 제49조12호)

- **(감리제도 도입)** 납부자 또는 대행자는 공사시행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착공, 시공, 준공 시 생태복원감리 실시(시행시기: '19년 승인사업부터)
 - 생태자문단은 설계단계 자문 실시

- **(운영의 미비점 보완)** 환경청 및 지자체 관련부서 참석 하에 착공, 시공, 준공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인계인수를 원활히 하고, 환경청은 준공검사 결과를 납부자 또는 대행자,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